

[서식 예] 계금청구의 소(순번계의 경우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계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. 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순번계의 마지막 20번 계원으로 가입하였으며, 2000. O. O. 20번으로 계금을 수령할 순번에 계금 5,150,000원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. 위 순번계는 계원들이 매월 계불입금을 계주



인 피고에게 피고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하고, 계주인 피고는 계원들로부터 위 계불입금을 받아들이어서 그 달의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하여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계입니다.

- 2.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계금을 받을 순번이 된 20〇〇. 〇. 〇.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계금 5,150,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각 계원에 게 문의해본 결과 계원 전원이 계불입금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시켰음이 확인되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계금 5,1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각 무통장입금증

1. 갑 제2호증의 1 내지 19 각 사실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원고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		
기타	 ・위 사안의 경우에는 순번계가 파계된 것이 아니고, 단순히 계주가 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임. ・순번계가 중도에 파계된 경우에 관하여는 순번계는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으면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데, 계가 민법 상 조합이라면 계가 해산한(파계된) 경우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한 재산은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,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, 그 청산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,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(대법원 1962. 7. 26. 선고62다265 판결). 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 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



에 제기할 수 있음
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음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